



제414회국회(임시회)
제1차 환경노동위원회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검 토 보 고

<1회용품 사용제한 예외 규정에 노령·질병·장애
등의 요건을 추가>

■ 김미애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126028호)

2024. 5.

환 경 노 동 위 원 회

수석전문위원 오창석

목 차

I. 제안경위	1
II.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1
III. 검토의견	3
1. 1회용품 사용제한 예외 규정에 노령·질병·장애 등의 요건을 추가	3
※ 참고자료	6
1. 사용억제·무상제공금지 대상 1회용품과 그 세부 준수사항	6

I. 제안경위

2023년 12월 20일 김미애의원이 대표발의한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2023년 12월 21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음.

II.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식품위생법」 제36조제1항제3호에 따른 식품접객업 등의 시설 또는 업종을 경영하는 사업자에게 1회용 컵·접시·용기·빨대 등 1회용품 사용을 억제하고 무상으로 제공하지 아니하도록 하는 의무를 부과하고 있음.

특히, 2021년 말 현행법 시행규칙 개정(2022년 11월 시행)에 따라 사용억제 및 무상제공금지 대상 1회용품에 1회용 빨대가 추가되는 등 1회용품 사용규제가 강화되었고, 이후 1년간의 계도기간을 거쳐 본격적인 시행을 앞두고 있음. 이에 식품접객업소에서는 기존의 1회용 빨대를 종이빨대 등으로 교체하고 있음.

그러나 연하(삼킴) 곤란이 있거나 노령·질병으로 인하여 종이빨대의 사용이 어려운 경우에는 플라스틱 빨대 미제공 시 음료 취식이 곤란하거나 안전사고가 발생할 우려가 있어, 예외적으로 플라스틱 빨대를 제공할 필요성이 있다는 점이 제기되고 있음.

그럼에도 현행법상 예외적으로 1회용품을 사용할 수 있는 사유에는
음식물을 제공·판매·배달하는 경우 또는 상례에 참석한 조문객에게
음식물을 제공하는 경우 등을 포함하고 있을 뿐 고령자·장애인이나
영유아 등 1회용품 사용이 곤란한 취약계층이 플라스틱 빨대를 요청
하는 경우를 포함하지 않고 있음.

이에 1회용품을 사용하거나 무상으로 제공할 수 있는 사유에 노령
· 질병 또는 장애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따라 안전사고 및
질병 예방을 위하여 고객이 1회용품 사용을 요청하는 경우를 추가함
으로써 1회용 빨대 등 사용이 곤란한 고령자 등을 보호하려는 것임(안
제10조제2항제4호 신설).

Ⅲ. 검토의견

1. 1회용품 사용제한 예외 규정에 노령·질병·장애 등의 요건을 추가

개정안은 노령·질병·장애¹⁾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되는 경우 안전사고 및 질병예방을 위하여 예외적으로 1회용품을 사용하거나 무상으로 제공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0조제2항제4호 신설).

[개정안 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10조(1회용품의 사용 억제 등) ① (생략)	제10조(1회용품의 사용 억제 등) ① (현행과 같음)
② 제1항 본문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1회용품을 사용하거나 무상으로 제공할 수 있다.	② ----- ----- ----- -----.
1. ~ 3. (생략)	1. ~ 3. (현행과 같음)
<신설>	4. <u>노령·질병·장애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따라 안전사고 및 질병 예방을 위하여 고객이 1회용품 제공을 요청하는 경우</u>
4. (생략)	5. (현행 제4호와 같음)
③ (생략)	③ (현행과 같음)

1) 연하(삼킴)곤란이 있는 경우 묽은 물이나 음료는 흡인의 위험이 높아 빨대나 스푼을 사용하여 섭취할 필요가 있음.

현행법 상 1회용품은 같은 용도에 한 번 사용하도록 만들어진 제품으로서, 대통령령에서 그 종류를 1회용 컵·접시·용기, 나무젓가락, 봉투·쇼핑백 등으로 정의하고 있는데(법 제2조제15호, 시행령 별표 1), 이들 1회용품에 대해서는 특정 시설 또는 업종에 대해 사용억제, 무상제공 금지를 규정하고 있으며(법 제10조제1항, 시행규칙 별표 2²⁾),

조리시설 및 세척시설이 음식물을 제공하는 장소와 같은 공간일 경우에는 1회용품을 사용하거나 무상으로 제공할 수 없음(시행령 제8조제3항)³⁾.

그러나, 노령·질병·장애 등으로 인하여 종이빨대의 사용이 어려운 경우 안전사고 발생 우려 및 음료취식 곤란 등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예외적으로 1회용 플라스틱 빨대 등 1회용품을 제공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개정안은 노령·질병·장애 등의 사유로 고객이 1회용품 제공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1회용품을 사용하거나 무상으로 제공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으로 그 취지는 타당한 것으로 보임.

참고로, 미국, 호주 등의 경우에도 장애나 의료적 필요가 있는 경우

2) 시행규칙 별표 2(사용억제·무상제공금지 대상 1회용품과 그 세부 준수사항)에서 목욕장업의 경우 1회용 면도기, 체육시설의 경우 1회용 응원용품 등 해당 시설·업종에서 다량 발생하는 품목 위주로 규제하고 있음. (참고자료 1. 참조)

3)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조(1회용품의 사용 억제 대상업종 등)
③ 법 제10조제2항제3호에 따라 「식품위생법」 제36조제1항제3호에 따른 식품접객업자가 상례에 참석한 조문객에게 음식물을 제공하는 경우로서 음식물을 제공하는 장소와 같은 공간(사방이 벽으로 둘러싸여 다른 장소와 구분된 공간을 말하며, 내부를 볼 수 있도록 투명한 칸막이 등으로 구획된 공간은 같은 공간으로 본다)에 고정된 조리시설 및 세척시설이 모두 갖추어져 있는 경우에는 1회용품을 사용하거나 무상으로 제공할 수 없다.

일회용품 사용금지에 대한 예외규정을 두고 있음.

[해외 플라스틱 사용금지 예외 사례]

국가	일회용 플라스틱 사용금지 예외 규정
미국	- 연방법률인 「장애인법(Disabilities Act)」에서 플라스틱 빨대 사용금지 예외 규정 마련* * 건강취약계층에 대한 일회용 플라스틱 빨대 허용은 주마다 상이하게 규정(캔사스주는 플라스틱 빨대 사용을 금지하고 있으나 아이다호주, 오하이오주, 테네시주 등은 플라스틱 빨대 사용을 제한하지 않고 있음)
호주	- (호주 빅토리아주) 장애나 의료적 필요가 있을 경우, 고객의 요청에 의해 예외적으로 일회용품 제공 가능

자료: 입법조사처(2023.,8.16.) 이슈와 논점(일회용 플라스틱 제품 사용금지의 쟁점과 과제)

한편, 환경부는 개정안의 취지에 찬성하는 의견이나, 법률로 1회용품 규제의 예외사항을 정하기보다는 하위법령 개정을 통해 1회용품 사용규제 관련 예외사항을 반영하는 것이 법체계상 적합하다는 입장임.

문 의 처

02)6788-5533

※ 참고자료

1. 사용억제·무상제공금지 대상 1회용품과 그 세부 준수사항⁴⁾

시설 또는 업종	대상 1회용품	준수사항
1. 「식품위생법」 제2조제12호의 집단급식소 또는 같은 법 제36조제1항제3호에 따른 식품접객업	가. 1회용 컵(종이컵, 합성수지컵 및 금속박컵 등) 나. 1회용 접시(종이접시, 합성수지접시 및 금속박접시 등) 다. 1회용 용기(종이용기, 합성수지용기 및 금속박용기 등) 라. 1회용 나무젓가락 및 이쑤시개 마. 1회용 수저, 포크 및 나이프 바. 1회용 비닐식탁보 사. 1회용 빨대 및 젓는 막대	사용억제
	아. 1회용 광고물 및 선전물	제작·배포 억제 등 사용억제
	자. 1회용 봉투 및 쇼핑백 [「통계법」에 따라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이하 “표준산업분류”라 한다)에 따른 음식점 및 주점업만 해당한다]. 다만, 다음의 것은 제외한다.	무상제공금지. 다만,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제과점업은 사용억제 한다.

4)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2

	1) 종이재질의 봉투 및 쇼핑백 2) 다른 제품에 물을 우려가 있거나 가루가 발생하여 별도의 보관이 필요한 제품 또는 겉면에 수분이 있는 제품이나 냉장고 등에 보관하는 제품으로서 상온에서 수분이 발생하는 제품을 담기 위한 합성수지재질의 봉투	
2. 「유통산업발전법」 제2조제3호의 대규모점포 내에서 영업하는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식품제조·가공업 및 즉석판매제조·가공업	1회용 합성수지용기. 다만, 다음의 것은 제외한다. 1) 밀봉포장용기 2) 생분해성수지용기	사용억제
3. 「공중위생관리법」 제2조제1항제3호의 목욕장업	가. 1회용 면도기 나. 1회용 칫솔 및 치약 다. 1회용 샴푸 및 린스	무상제공금지
4. 「유통산업발전법」 제2조제3호의 대규모점포	가. 1회용 봉투 및 쇼핑백. 다만, 다음의 것은 제외한다. 1) 종이재질의 봉투 및 쇼핑백 2) 생선, 정육, 채소 등 음식료품의 겉면에 수분이 있는 제품이나 냉장고 등에 보관하는 제품으로서 상온에서 수분이 발생하는 제품을 담기	사용억제

	위한 합성수지재질의 봉투	
	나. 1회용 우산 비닐	
	다. 1회용 광고물 및 선전물	제작·배포 억제 등 사용억제
5.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의 체육시설	1회용 응원용품	무상제공금지. 다만, 합성수지재질의 응원용품은 사용억제한다.
6. 표준산업분류에 따른 도매 및 소매업	가. 1회용 봉투 및 쇼핑백. 다만, 다음의 것은 제외한다. 1) 종이재질의 봉투 및 쇼핑백 2) 생선, 정육, 채소 등 음식료품의 겉면에 수분이 있는 제품이나 냉장고 등에 보관하는 제품으로서 상온에서 수분이 발생하는 제품을 담기 위한 합성수지재질의 봉투	무상제공금지. 다만,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종합 소매업은 사용억제 한다.
	나. 1회용 광고물 및 선전물	제작·배포 억제 등 사용억제
7. 표준산업분류에 따른 금융업, 보험 및 연금업, 증권 및 선물중개업, 부동산 임대 및 공급업, 광고 대행업, 교육 서비스업 중 기타 교육기관, 영화관 운영업, 공연시설 운영업	1회용 광고물 및 선전물	제작·배포 억제 등 사용억제

※ 비고

1. 제1호라목 중 이쑤시개는 별도의 회수용기를 갖추고 계산대나 출입구에서만 제

공하는 방법으로 사용할 수 있다.

2. 제1호라목에도 불구하고 「식품위생법」 제37조제4항에 따라 같은 법 제36조 제1항제3호에 따른 식품접객업의 영업신고를 한 편의점 사업자가 즉석조리식품, 냉동식품 등의 음식물을 가열만 하여 판매하는 경우에는 1회용 나무젓가락을 사용할 수 있다.
3. 제6호의 도매 및 소매업(표준산업분류에 따른 종합 소매업은 제외한다)을 경영하는 사업자는 제6호가목에 따른 1회용 봉투 및 쇼핑백을 유상으로 판매하는 경우 고객이 사용한 1회용 봉투 및 쇼핑백을 되가져올 때 판매금액을 환불하거나 장바구니를 이용하는 고객에게 일정금액을 할인해 주는 방법 또는 사은품을 제공하는 방법 등으로 혜택을 제공하도록 노력해야 하며, 이러한 내용의 안내문을 매장 안에 게시하거나 1회용 봉투 및 쇼핑백에 인쇄하는 방법으로 고객이 이 사실을 알기 쉽게 해야 한다.